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가단515273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정준모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해영

변론 종결2023. 4. 6.

판결 선고2023.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18,490,067원 및 그 중 2,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1,718,490,067원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2021. 11.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소외 회사의 D 제2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기계·기구 일체, 재고자산 일체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19,113,643,930원, 보험기간 2019. 12. 11. 16:00부터 2020. 12. 11. 16:00까지로 정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 도금설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8조 제1항에서 피고는 본 계약물품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검수 합격일로부터 1년간 보증을 해야 하며 보증기간 중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수하되, 소모품은 제외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도금수조 150개 및 그 제어장치를 제조하여 2020. 3. 10. 이 사건 공장건물에 설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20. 10. 6.경 이 사건 공장건물 내 3번 도금수조(이하 '이 사건 도금수조'라 한다)에 설치된 히터봉을 교체하였다.

라. 2020. 12. 3. 23:19경 이 사건 도금수조에서 화재가 발생하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 불길이 번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합계 6,500,000,000원(= 건물 2,500,000,000원+기계 3,600,000,000원+재고 40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보험금으로 2021. 4. 27. 2,500,000,000원, 2021. 10. 13. 1,718,490,067원, 합계 4,218,490,067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원인 등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2020. 12. 17.자 화재감정서]

○ 3번 도금라인의 3번 도금조를 발화부로 한정할 수 있다.

○ 전원이 연결되어 있던 히터 연결전선에서 단락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 히터 발열부와 플라스틱 수조의 접촉에 의한 발화 가능성 등 3번 도금조에 전원이 인가되어 있던 부분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3번 도금조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들의 심한 소훼 및 변형으로 인해 발화원으로 특정할 수 있는 특이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여서,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에 대한 한정은 어렵다.

[E연구원의 2020. 12. 24.자 화재현장조사서]

① CCTV 영상자료에서 22:11:10경부터 22:55:10경까지 약 44분 동안 니켈 도금조 내부에서 불빛의 켜짐과 꺼짐이 반복되는 점멸현상이 약 10회 발생한 점, ② 일반적으로 도금액 등의 열전달매체가 도금조 내 부족한 상태에서 히터봉이 작동하는 경우 온도센서에 의한 정상적인 온도 감지가 불가하여 대기에 노출된 히터봉의 표면이 적용되거나 히터봉 주위의 가연물이 착화될 수 있는 점, ③ 히터봉의 적열 또는 화염에 의한 열기를 온도센서가 감지할 경우 히터봉의 작동이 정지하여 적열 또는 화염이 소멸되고, 이는 히터봉의 전원이 차단되기 전까지 반복되기 때문에 히터봉의 적열 또는 화염 불빛에 의한 점멸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점멸현상은 히터봉의 적열 또는 화염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도금조 내부에 도금액이 없었거나 부족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F의 2021. 4. 19.자 손해사정보고서]

CCTV 화면에 22:57경 장식도금 및 무전해 니켈 라인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발화장소에는 자동온도를 제어하는 시설 외 다른 발화요소가 없는 점, 마지막 퇴근자가 다음날 예열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동 온도제어장치를 켜 놓고 퇴근을 하여 기계는 계속 가동 중이었던 점 등의 사실에 의해 화재원인은 자동 온도제어(시즈히터와 수온센서) 장치 이상에 의한 화재로 추정한다.

[인정 근거] 다통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7,, 10, 1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설치한 이 사건 도금수조의 균열로 도금액이 줄어들었으나 수위 감지기가 전원을 차단하지 못하여 히터봉이 과열되고, 다시 온도 조절장치가 전원을 차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도금수조 및 제어장치의 제조업자인 피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소외 회사에 합계 4,218,490,067원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18,490,06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소외 회사 직원이 이 사건 도금수조 내 도금액 수위를 살펴보고 퇴근하였고, 이 사건 도금수조는 플라스틱 재질로 외부 충격이 아닌 이상 균열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공장건물 내 누수 감지기에 의하여 누수가 감지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도금수조 균열로 인한 도금액 감소, 수위 감지기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화재는 소외 회사가 임의로 교체한 히터봉이 과열되었거나 소외 회사 직원이 이 사건 도금수조 내 여과기를 꺼 두고 퇴근함으로써 여과되지 않은 찌꺼기가 히터봉에 닿아 발화하였거나, 소외 회사가 임의로 이 사건 도금수조 내 동 버스바(bus-bar) 등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설계·제조상 하자가 아닌 소외 회사 측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다(수위 감지기가 낮아진 수위를 감지하지 못한 이유도 찌꺼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2)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시방서 등을 토대로 작성한 도면에 따라 이 사건 도금수조 및 제어장치를 제작하였고, 특히 온도 조절장치 등 제어장치는 소외 회사가 요구한 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피고가 도금수조 150개를 납품한지 약 8개월 후 이 사건 도금수조 1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도금수조 및 제어장치에 제조물 책임법이 정한 제조상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도금수조 및 제어장치는 소외 회사의 시방서 등 제공, 도면 검증, 승인을 거쳐 설계되었고, 납품 후 소외 회사의 지배영역 안에서 관리·유지되었으며, 특히 피고의 납품 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도금수조의 히터봉, 수위 감지기, 온도 조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제2호)으로부터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도금수조의 히터봉, 수위 감지기, 온도 조절장치는 피고가 공급한 것이 아니고, 소외 회사에 지시에 따라 설계하고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하는 히터봉, 제어장치 등 부품을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호, 제4호에 따라 면책된다. 또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는 소모품에 대한 무상 보수 의무가 없는데, 수위 감지기, 온도 조절장치는 소모품으로서 소외 회사에 이를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소모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소외 회사에 제공한 전기제어판넬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유지보수

5) 레벨센서 이물질에 의해서 볼 슬라이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손으로 체크하고 육안으로 관찰한다.

5. 경고

1) 강산을 취급하는 도금조는 레벨센서 및 각종 전기 제어부품의 조기 마모가 발생되어 히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예방보전을 실시하고 퇴근시 필히 메인 전원 차단기를 OFF한다.

2) 이 사건 화재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26:50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작업자가 밖으로 나간 후 22:11:10경 이 사건 도금수조 내부가 밝아졌다가 22:17:10경 다시 어두워지고, 그 후 22:17:38경부터 22:55:1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금수조 내부가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현상이 반복되다가 22:55:12경부터 이 사건 도금수조의 불빛이 확대되어 화염이 성장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3) 증인 G, H, I의 증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외 회사의 도금수조 관리자 G]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금수조의 규격, 재질, 크기, 기능 등을 지시하였을 뿐, 특정 부품이나 특정 회사의 제품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도금수조 내 히터봉 4개 중 3개를 교체한 상태였고, 다른 부품이나 소모품은 교체하지 않았다. 교체한 히터봉이 피고가 최초 설치시 여분으로 두고 간 것인지 소외 회사가 남부열기, 지구전기로부터 공급받고 남아 있던 히터봉인지는 모르겠다. 히터봉의 발열부가 (도금용액 수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공기 중에 노출되면 빨갛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되면 바로 철거한다.

이 사건 도금수조에 도금액 2,000ℓ가 있었고, 도금수조가 완전히 파손되었다면 도금용액이 새겠지만 미세하게 균열이 났다면 2시간 만에 새지는 않는다. 도금용액은 3개월 정도 사용한 후 폐기하고 다시 넣는다. 여름에는 도금용액의 온도를 금방 올릴 수 있지만, 겨울에는 퇴근 때 온도를 유지시켜 놓는다. 도금용액에 떠다니는 도금찌꺼기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도금용액 전체의 온도가 고르게 분포하도록 여과기를 돌린다. 작업자들이 아침에 이물질이 있는지 점검하고 작업을 시작한다. 이 사건 화재 당시 도금은 하지 않았으나 기존의 찌꺼기는 존재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 후 피고에게 의뢰하여 히터봉 방식을 스팀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E연구원 소속 H]

도금수조 내 도금용액이 있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 2시간 내 증발하기는 어렵다. 도금수조 온도 조절장치는 설정된 온도보다 2도 높으면 히터봉의 전원을 차단하고, 그보다 2도 내려가면 히터봉의 전원을 켜서 도금용액을 데우는데, CCTV영상에서 도금수조 내 불빛이 주기적으로 밝아졌다가 꺼지는 것으로 보아 온도 조절장치와 히터봉은 정상 작동하였다고 판단했고, 수위 감지기나 그로 인한 제어계통의 문제로 보인다. 액체가 없는 상태에서 히터봉이 발열하면 빨갛게 달아오른다.

CCTV영상에서 팍팍 튀는 스파크가 보이지 않고 점차적으로 달아오르다 시간이 지나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이물질이 히터봉 발열부에 스쳐 스파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매질이 있으면 히터봉의 열을 온도 조절장치가 제대로 감지해서 온도를 제어할 수 있으나 매질이 없으면 온도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여 히터봉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감지를 못한다. 히터봉의 열선이 규격에 맞지 않아 과열되는 하자가 있었다면 제조·검사과정에서 다 걸러졌을 것이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순간

못 쓰게 되었을 것이다. 히터봉은 공장에서 누구든지 연결할 수 있는 단순한 기계장치이다.

도금수조는 영세한 업체에서는 거의 수작업으로 하고 수위 감지기가 없는 도금수조도 많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1]

이 사건 도금수조의 온도 조절장치가 소훼·변형되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수조가 다 타버려 도금액이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없었다. 전기화재는 히터봉에서 발생하는 열, 히터봉과 연결된 전선의 합선, 제어장치 내부 전기부품 등으로부터 불이 날 수 있고, 전기가 살아있는 곳이라면 이 사건 도금수조 내 어디든 불이 날 수 있다.

히터봉의 문제로 불이 난 것을 많이 감정했다. 히터봉이 과열돼서 전기적으로 히터 자체가 녹고 내부의 열선도 전기적으로 문제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히터봉 과열로 불이 났다면 전기적으로 용융되거나 내부 산화마그네슘이 변색되거나 검게 변해야 하는데, 이 사건 도금수조 히터봉 4개를 수거하여 분해·검사하였으나 히터봉 내부는 깨끗했고 과열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히터봉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빨갛게 되고, 고온이기 때문에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다.

[인정 근거] 증인 G, H, I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2호),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같은 호 가.목)고 규정하면서 "제조업자"라의 예로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제3조 제3호 가.목)를 들고 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 것(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이다.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설치한 이 사건 도금수조의 균열로 인하여 도금액이 누출되었음에도 수위 감지기의 오작동으로 히터봉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아 공기 중에 노출된 히터봉이 과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도금수조와 수위 감지기 등 제어장치를 제조한 제조업자인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인 소외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화재가 최초로 발생한 지점은 이 사건 도금수조이고, 앞서 본 사정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금수조 내 화재의 원인으로 ㉠ 히터 연결전선의 단락 등 전기적 원인, ㉡ 소외 회사가 교체한 히터봉의 발열부 높이가 종전 히터봉보다 높아 발열부 중 도금액에 잠기지 않고 공기 중에 노출된 부분의 과열, ㉢ 히터봉(소외 회사가 교체한 히터봉 포함) 자체의 과열, ㉣ 이 사건 도금수조에서 여과되지 않고 남아 있던 황산니켈 등 찌꺼기가 히터봉에 닿아 발화, ㉤ 도금액의 유출로 공기 중에 노출된 히터봉의 과열 등을 들 수 있다.

② 그런데 전선의 단락 등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 먼저 단락 등이 발생한 곳에 불꽃이

발생한 후 불꽃 발생지점으로부터 화염이 퍼져가는 모습이 관찰되어야 하고, 한번 발생한 화염이 다시 줄어들어 후 또다시 발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화재의 경우 이 사건 도금수조가 수차례 반복하여 서서히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모습이 관찰될 뿐이어서,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라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소외 회사가 교체한 히터봉 발열부가 종전 히터봉보다 높아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면 히터봉 교체 즉시 그로 인한 과열 현상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히터봉 교체일인 2020. 10. 6.경부터 이 사건 화재일인 2020. 12. 3.경까지 59일간 히터봉 발열부 길이 차이로 인한 과열이 발견된 적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히터봉이 고장으로 인하여 발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당초 설계된 목표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과열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소외 회사가 교체한 히터봉이 과열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금수조 내 도금액의 양이 충분하였다면 도금액에 잠긴 부분이 화재 발생에 이를 정도까지 과열될 수 없고, 도금액의 온도 상승이 감지되면 온도 조절장치가 히터봉의 전원을 차단하여 다시 온도가 내려가게 되므로, 히터봉의 고장으로 인한 과열은 온도 변화의 속도를 가속시켜 히터봉의 작동과 휴지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좁힐 수 있을 뿐 화재의 원인은 될 수 없다(이 사건 화재 당일 온도 조절장치가 정상 작동하여 수차례에 걸쳐 히터봉의 작동이 멈추고 온도가 다시 내려간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⑤ 이 사건 화재 당일 G이 여과기를 끄고 퇴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도금수조 내 도금액에 황산니켈 등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도금액이 충분하였다면 히터봉의 발열부는 모두 도금액 속에 잠겨 있게 되므로, 물 속에 잠긴 히터봉이 찌꺼기와 접촉하더라도 불꽃이 발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찌꺼기와 히터봉의 접촉으로 불꽃이 발생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화재는 전기 단락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염이 주변으로 퍼져가는 양상으로 나타나야 하고, 한번 발생한 화염이 다시 줄어들거나 다시 커질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금수조가 수차례 반복하여 서서히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양상은 찌꺼기의 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⑥ 결국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도금수조의 균열 등으로 인하여 도금액이 유출되어 그 수위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공기 중에 노출된 히터봉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공기 중에

노출된 히터봉의 과열로 남아 있던 도금액이 증발하고, 도금액의 수위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 히터봉의 노출 면적이 더욱 증가하여, 과열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⑦ 도금액 유출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금수조의 수위가 낮아졌더라도 수위 감지기가 이를 감지하여 히터봉의 전원을 차단하였다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금수조의 수위 감지기를 비롯한 제어장치는 모두 피고가 제작하여 설치한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도금수조의 수위 감지기를 교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수위 감지기의 오작동 또한 피고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 해당한다.

⑧ 동 버스바, 집게 등은 도금 물체의 모양 등에 따라 위치나 개수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 설치 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것을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퇴근 후에도 히터봉을 켜둔 것은 전기제어판넬 매뉴얼 위반에 해당하나, 퇴근 후 사용은 화재 자체의 원인이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원인에 불과하므로, 역시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다만 이를 아래에서 피고의 책임 제한사유로 참작한다).

⑨ 이 사건 도금수조와 수위 감지기는 피고가 공급한 것이고, 소외 회사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도금수조의 균열이나 수위 감지기의 오작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히터봉 방식은 도금수조에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이 사건 화재는 소외 회사가 스팀 방식이 아니라 히터봉 방식을 채택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도금수조의 균열 및 수위 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찌꺼기의 크기와 수위 감지기의 구조에 비추어, 찌꺼기로 인하여 수위 감지기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금수조를 비롯한 도금수조 150개는 피고가 설치한 후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온 점, ② 피고가 제공한 전기제어판넬 매뉴얼에 히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을 이유로 퇴근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소외 회사는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히터봉을 켜둔 점, ③ 이 사건 도금수조가 밝아지기

시작한 22:11:10경부터 22:55:12경까지 약 44분간 히터봉의 과열이 화재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과실로 6,500,000,000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내역,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비롯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미보상손해액'이라고 한다)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 범위 내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온전한 권리이므로, 피보험자의 행사 또는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 회사의 손해액은 6,500,000,000원이고, 그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1,300,000,000원(= 6,500,000,000원×20%)이며, 소외 회사의 미보상손해액은 6,500,000,000원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4,218,490,067원을 공제한

2,281,509,933원(= 6,500,000,000원-4,218,490,067원)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항지원